



제 438국회 (임시회)
제 2차 정무위원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보험사기죄 법정형 상향〉

■ 유동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71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유동수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6. 4. 8.

다. 회 부 일 : 2026. 4.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제정된 현행법은 보험사기행위가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을 유발하고 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는 등 그 폐해가 큼을 감안하여,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형법」상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보다 엄중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함으로써 보험사기 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사기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사기죄의 법정형을 징역 20년, 벌금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법의 보험사기죄 법정형이 오히려 「형법」보다 낮아져 당초의 입법 취지와 어긋나게 된 바, 보험사기죄의 징역형을 개정된 「형법」상 사기죄와 상응하는 수준인 20년 이하로, 벌금을 7천

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보험사기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8조제1항).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현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보험사기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10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5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② (생략)	제8조(보험사기죄) ① ----- ----- <u>20년</u> ----- ----- <u>7천만원</u>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현행법은 기존에 「형법」 상 사기죄로 처벌하던 보험사기에 대해 별도의 ‘보험사기죄’를 신설하여 보다 중하게 처벌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를 통해 보험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결국에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¹⁾. 이에 국회는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²⁾하여 ‘보험사기죄’를 신설하고, 기존 「형법」 상 사기죄보다 법정형을 상향하였음.

1) 의안번호 191864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안(제안일 2016. 3. 2.) 제안이유 참조

2) 2016. 3. 2. 정부위원장 제안으로 2016. 3. 3.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2016. 3. 29. 공포되어 2016. 9. 30. 시행됨.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당시 「형법」 상 사기죄³⁾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보험사기죄는 이보다 높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였음.

- 상습범⁴⁾ 및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자⁵⁾에 대한 가중처벌은 양자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의 시행(2016. 9. 30.) 이후에 기수에 이른 범행에 대해서는 보험사기죄가 적용되어 중한 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음⁶⁾.

-
- 3) 법률 제21231호(2025. 12. 23. 개정)로 개정되기 전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형법」 **제351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47조 내지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5)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併科)할 수 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1조(보험사기죄의 가중처벌)** ① 제8조 및 제9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보험사기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보험사기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보험사기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보험사기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6)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형법」 제347조에 따른 사기죄 중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법으로, 이 법 시행(2016. 9. 30.) 전 기수에 이른 범행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가, 시행 후 기수에 이른 범행에 대해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각각 적용됨(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1도10855 판결 참조).

□ 그런데, 최근 「형법」 개정⁷⁾으로 사기죄의 법정형이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됨에 따라, 보험사기에 대한 특별법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상 법정형이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보다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음.

○ 개정 전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1995년 개정된 것으로, 약 30여 년간 물가가 상승한 것을 고려할 때 벌금형의 처벌 수위가 실질적으로 약화되었다는 점, 최근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⁸⁾하여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을 대폭 상향한 것임.

□ 이에 개정안은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이 상향된 것에 상응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보험사기 범죄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제정 취지, 최근 「형법」 개정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임.

- 참고로, 금융위원회 및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에서도 개정안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7) 2025. 12. 23. 개정 및 시행

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019) 검토보고(법제사법위원회) 참조

문 의 처

02)6788-5106
